



제 433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32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동물 판매 과정에서의 구매자의 실물 확인 규정 신설 등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1. 2.

3. 회 부 일 : 2026. 1.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판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를 상대로 분양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재의 강도가 낮아 온라인 기반의 불법 영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자에게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을 때에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동물 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동물 판매 과정에서의 구매자의 실물 확인 규정 신설 등

개정안은 전달 방식과 관계없이 구매자가 사전에 동물을 직접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생략)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⑤ · ⑥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u><신설></u>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판매할 것</u>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7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u>

② ~ ⑤ (생략)	<u>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물 을 판매한 영업자</u> ②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시행규칙¹⁾에서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의 판매를 포함하여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후에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비대칭과 거래 이후의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다만, 이와 같은 대면 확인 의무는 현재 시행규칙상 ‘영업자 준수사항’ 중 하나로 규정²⁾되어 있어, 현장에서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경고·지도와 준수 의무 인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대면 확인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온라인 판매 관행에 대한 규율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은 위반 행위의 엄중함에 상응하는 실효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 다목 1) (2025. 8. 7. 시행) 다. 동물판매업자 1) 동물을 판매(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판매를 포함한다)할 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뒤에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2)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려는 입법 정책적 결정 사안이나,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일 법 내 유사한 의무 위반 행위들과 그 태양(態樣)을 비교하여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현재 「동물보호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실험 중지 요구 불응이나 시설·인력 기준 미준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부과되며, 노화·질병 동물의 유기 목적 거래 등은 3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대면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러한 기존 제재 수준과의 형평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면 확인 의무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미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는 점³⁾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의 이행 실태와 현행 제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다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현행법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법 제78조제6항)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01조제3항제19호).

[동법 및 유사입법례 제재 수준 비교]

근거법률	제재수준	위반 행위
동물보호법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맹견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한 영업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영업자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곰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 1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8. 7.>

다. 동물판매업자

- 1) 동물을 판매(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판매를 포함한다)할 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뒤에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 2) 다음의 월령(月齡) 이상인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한다.
 - 가) 개·고양이: 2개월
 - 나) 그 외의 동물: 젖을 떼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 3)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서는 안 된다.
- 4) 동물 판매, 알선 또는 중개 시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가)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 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기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 내용
 - 다) 삭제 <2025. 8. 7.>
- 5)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작성된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와 판매동물의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예방접종기록을 포함한다)에 관한 증명서류(별지 제36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진단서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를 말한다)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1. 계약내용

매매금액	금 원 정 (₩)	인도일	년 월 일
------	------------	-----	-------

2. 반려동물 기본 정보

동물의 종류		품 종		성별	암 / 수
출생일		부		모	
입수일		생산자/수입자 정보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털색		동물등록번호			
특징					

3.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예방접종기록 포함)

현재 상태		[]양호 []이상 []치료 필요		증성화 여부	[]예 []아니요
세부 기록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4. 분쟁해결기준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 금액 환불(다만, 구매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소(판매자)가 각종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구매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이 지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반려 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3)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다만, 구입 후 7일 이내)

5. 구매자 주의사항

- 반려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판매자가 반려동물별로 작성합니다.
- 다만, 구매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이 제한될 수 있는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주의사항
과 구분하여 분명하게 적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판매자	상호명, 주소				서명 날인	(인)
	동물판매업 허가번호					
	연락처		성명			
구매자	주소				서명 날인	(인)
	연락처		성명			

6) 5)에 따른 계약서와 판매동물의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기 위하여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를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7) 별표 10 제2호다목2)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의 거래를 알선·중개해서는 안 된다.

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의 사항을 게시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고해야 한다.

가) 1)에 따른 판매 전 동물의 실물 확인 의무

나) 5)에 따른 계약서 및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

다) 판매대상 동물의 개별 정보(품종, 성별,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을 말한다)